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37

발의연월일: 2022. 9. 20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득구·김민석

맹성규 • 민병덕 • 송재호

안규백 • 이명수 • 조정식

한병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,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

따라서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.

이에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(안 제10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	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
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	관련 감면 등) ①
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	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	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	
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	
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	
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	
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	
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	
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	
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	
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	
50을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경	<u>2027년 12월 31일</u>
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	
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	
자금·영어자금·영림자금(營林資	
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	
경우로 한정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